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남녀평등교육의 증진’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통합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률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명칭 변경(법령명, 제1조, 제2조 개정)

나.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8조 개정)

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 제6조의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2021.11.16.~2021.12.27.
3) 규제심사 추후 예정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명 중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한다.

제2조 1호 및 2호 중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양성평등교육증진”으로 한다.

제2조 3호 중 “남녀평등교육의식”을 “양성평등교육의식”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남녀평등의식 고취 및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의4 및 제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5의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 제1호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로 한다.

제8조 중 “남녀평등교육”을 “양성평등교육”으로 한다.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남녀평등교육심의회</u>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u>남녀 평등교육심의회</u>의 기능, 위원의 자격 ·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능) <u>남녀평등교육심의회</u>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남녀평등교육증진</u>을 위한 교 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u>남녀평등교육증진</u>을 위한 교 육과정 · 교수방법 · 교육내용 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u>남녀평등교육의식</u> 활 성화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진로 · 직업 관련 <u>남녀평등의 식 고취</u> 및 <u>남녀평등</u> 고용 활 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u>양성평등교육심의회</u> 규정 제1조(목적) ----- ----- <u>양성</u> <u>평등교육심의회</u>----- ----- ----- ----- 제2조(기능) <u>양성평등교육심의회</u> ----- ----- 1. <u>양성평등의식증진</u>----- ----- ----- 2. <u>양성평등의식증진</u>----- ----- ----- 3. ----- <u>양성평등교육의식</u> -- ----- 4. (현행과 같음) 5. ----- <u>양성평등의 식 고취</u> 및 <u>양성평등</u> ----- ----- -----

5의2. (생략)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생략)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신설)	<u>5의4.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u>
5의5. (신설)	<u>5의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1. <u>남녀평등</u> 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연구기관·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u>양성평등</u>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생략)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 제2조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 ----- ----- <u>제5호까지</u> <u>지</u> , <u>제5호의4</u> 및 <u>제5호의5의</u>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에서 <u>남녀평등교육</u> 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8조(간사등) ----- ----- ----- <u>양성평등교육</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7115